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정부 제출

2016.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목 차

I. 제안경과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의 품질·안전기준 용어 통일	4
2. 법 적용제외 대상의 명확화	6
3.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강화	7
4. 위해성 비료에 대한 수입 제한 및 조사 범위 확대	11
5.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 신설	12
6. 영업승계의 신고	14
7. 영업정지 기간 확대	15
8. 비료에 대한 거짓·과대광고의 금지	16
9.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7
10.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 일부 폐지	19
11. 비료업자 등에 대한 명령 및 보고의무 폐지	22
12. 권한의 위임	23

I . 제안경과

정부가 제안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6월 16일 제출되어 2016년 6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불량 비료의 생산·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안 제2조 제6호나목, 제4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에 대해서도 공정규격을 지키도록 하고, 신고 대상인 비료수입업의 범위에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도 추가하도록 함.

나.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 확대(안 제10조)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만 수입을 제한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위해성이 우려되는 모든 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하여 수입 제한 및 위해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임.

다.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 신설(안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 신설)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고 생산시설 및 비료 창고 등을 방치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바,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의 영업 현황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비료에 대한 거짓·과대광고의 금지(안 제20조의2 및 제28조제3호 신설)

비료의 성분·효과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처분일부터 1년간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바.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 일부 폐지(현행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삭제)

비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 등을 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함.

Ⅲ. 검토 의견

1.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의 품질·안전기준 용어 통일(안 제2조제3호 등)

현행은 비료¹⁾ 중 ‘보통비료’에 대해서만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정규격(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치, 유통기한 등)²⁾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는 공정규격을 설정하는 대신 농식품부 장관이 부산물비료를 ‘지정’³⁾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도 보통비료와 동일하게 공정규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보통비료 (법 제2조제2호)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공정규격의 설정	현행과 같음
부산물비료 (법 제2조제3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등 영위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음식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u>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u>	----- ----- ----- ----- <u>공정규격이 설정된 것</u>

1) 비료는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구분됨(「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 보통비료 :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석회질비료 등 9개 비료로 대구분
- 부산물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미생물비료 등 4개 비료로 대구분

2) 법 제2조제4호: “**공정규격**”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3) 농식품부 장관은 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미생물비료 등 4개 종류의 부산물비료를 지정하고 있음.

그동안 보통비료(대부분 화학비료)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공정규격을 설정⁴⁾하여 운영하였고, 부산물비료는 판매보다는 자가(自家)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준이 완화된 농식품부장관의 지정으로 운영하였으나,

최근 대규모 축산의 도입 등으로 개별 농가에서 필요한 퇴비를 자가 제조하기 어려운 실정⁵⁾이므로, 대부분의 농가(약 76만 농가)는 부산물비료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

실제 운영에 있어 「비료 공정규격의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장 고시)에 의하여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설정’(규칙 제3조)과 ‘부산물 비료의 지정’(규칙 제4조)은 동일한 수준의 품질·안전 세부기준(6개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음.

<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의 기준 >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기준	부산물비료의 지정 기준
비료의 종류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규격
비 고	비 고
비료의 원료	비료의 원료

4) 설정 : 새롭게 만들어 정해 두는 것(예: 200헤리 경제수역 설정, 근저당권 설정)
지정 : 이미 있는 것에 의미를 주어 정하는 것(예: 문화재 지정, 좌석 지정)

5) 대부분 농가(약 76만 농가)는 부산물 비료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행 부산물 비료도 공정규격 수준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가 동일한 수준의 세부기준으로 관리되는데 반해, 사용하는 용어는 ‘공정규격 설정’과 ‘지정’으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 동 규정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의 품질·안전기준 용어를 모두 ‘공정규격 설정’으로 통일함으로써, 부산물비료는 규격 기준이 낮다는 오해를 불식시킴과 아울러 관련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법 적용제외 대상의 명확화(안 제3조제2항)

현행은 농업·임업·축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를 판매(1.5톤/1일 이하)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그 적용배제 대상을 ‘부산물비료’에서 ‘비료’로 변경하는 내용임.

<법 적용 예외 대상>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제2항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 법 적용 예외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 법 적용 예외

현행법 제3조제2항의 부산물비료는 농축산업 등의 영위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비료(자가 퇴비 등)로서 그 성격상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시켜 농가가 자유롭게 제조·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반면에 현행법 제2조제3호의 부산물비료는 농식품부장관이 그 종류를 ‘지정’(개정안: 공정규격의 설정)한 것으로 현행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산물비료와는 성격이 다른 것임.

그럼에도 두 조항에서 동일하게 ‘부산물비료’란 용어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집행상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개정안은 이와 같은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제3조제2항의 ‘부산물비료’를 ‘비료’로 용어를 수정하여 농축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원료로 ‘비료’를 제조하는 경우 법 적용 예외에 해당되도록 명확하게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농축수산 농가 등이 배출하는 부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자원화 유도로 농업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3.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강화(안 제2조제6호나목, 제4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7조)

가.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범위 확대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대상에 대하여 **현행** 규정은

비료를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까지를 추가하려는 것임.

< 공정규격 설정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범위 확대 >

	현 행	개 정 안
공정규격 설정	판 매	판매 + 무상으로 유통·공급
비료수입업 신고	판 매	판매 + 무상으로 유통·공급

그동안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부정·불량비료가 농지에 투입되는 사례가 있었고,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에 따라 폐기물 등의 해양배출이 금지⁶⁾됨에 따라 국내산 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부정·불량비료가 농지에 투입될 우려⁷⁾가 더 커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판매되는 비료에 더하여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기준(공정규격 설정)을 준수하고, 무상으로 유통·공급할 목적으로 수입한 비료에 대해서도 신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판매되는 비료 보다 무상으로 생산 및 수입되어 유통·공급되는 비료의 경우 공정규격을 준수하지 않아 부정·불량비료일 개연성이 더 높고, 이를 방치할 경우 부정·불량비료가 여과 없이 농지에 투입되어 농업환경

6) 해양배출 금지 : 축산분뇨(2012), 음식물쓰레기(2013), 오니(2014).

7) 연간 가축분뇨 생산량이 약 4600만톤, 음식물폐기물은 약 500만톤 수준이며 이중 정부지원 가축분 퇴비, 퇴비 등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약 320만톤에 불과하므로 남은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이 농지로 무단투입 될 가능성이 상존함.

오염 및 농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에 대해서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신고대상인 비료수입업의 범위에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이라 판단됨.

나. 비료의 관리·감독, 행정처분 대상 범위 일원화

현행은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함에 있어 보증표시 및 판매관리(법 제14조)의 경우 ‘진열·판매·유통·공급’으로, 품질검사(법제18조)의 경우 ‘보관·판매, 무상으로 유통·공급’으로,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법 제20조)의 경우 ‘판매, 무상으로 유통·공급’으로 대상행위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보증표시 및 품질검사, 등록취소 등의 경우 비료의 유·무상 구분없이 ‘보관·진열·판매·유통·공급’하는 행위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 비료의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대상 범위 >

	현 행	개 정 안
보증표시, 판매관리	진열·판매·유통·공급	보관·진열·판매·유통·공급
품질검사	보관·판매, 무상으로 유통·공급	보관·진열·판매·무상유통·공급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판매, 무상으로 유통·공급	보관·진열·판매·유통·공급
	판매	보관·진열·판매·유통·공급

비료의 유통·공급과정을 관리·감독함에 있어 유·무상을 사실상 구분하기 어렵고, 비료의 보증표시 및 등록취소 등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판매·공급 또는 보관·진열⁸⁾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 등의 범위가 서로 달라 법 적용의 혼란이 발생함. 예를 들어, **보증표시 및 판매관리**는 ‘보관’인 경우 처벌하지 못하고, **품질검사**는 ‘진열’의 경우 조사가 곤란하며,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경우 ‘보관 또는 진열’인 경우 행정처분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비료의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관된 조사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비료의 유·무상 구분 없이 ‘보관·진열·판매·유통·공급’으로 대상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조치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의 품질검사(안 제18조)는 현행 조문에 ‘진열’의 경우만을 추가하였으나 ‘무상 유통’에 대해서도 유·무상 구분없이 ‘유통’으로 조정하여 대상행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품질검사	보관·판매, 무상으로 유통·공급	보관·진열·판매· <u>무상유통</u> ·공급	보관·진열·판매· <u>유통</u> ·공급

8) 실제 단속과정에서 부정·불량비료의 판매·공급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보관·진열을 확인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움.

4. 위해성 비료에 대한 수입 제한 및 조사 범위 확대(안 제10조)

현행은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 등의 수입 제한 및 검사 대상의 경우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든 ‘비료’로 확대하려는 것임.

< 위해성 비료 등에 대한 조치 >

	현 행	개 정 안
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 제한 범위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	비 료
검 사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	비 료

※ ‘비료’는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나누어지고 현행법에 규정된 ‘유기질비료’는 부산물비료의 한 종류이므로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는 잘못된 표현임.

현재 수입비료를 통해 중금속 및 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으나, 수입 검사⁹⁾ 대상¹⁰⁾으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포함)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수입비료(보통비료)에 대해서는 중금속 함유 및 병해충 유입에 따른 토양환경의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수입을 제한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해성 여부를 검사할 근거 또한 없음.

9) 수입검사 절차: 수입업체 수입 신고 → 국립농업과학원에서 현장방문 및 시료수거(항구 방문) → 위해성분 검사 → 중금속 검사합격 증명서 발급 → 통관.

10) 현재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수입비료의 종류 103종 중 부산물비료 30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위해성이 있는 수입비료가 사전 통제없이 농지에 투입되거나 국내 원료와 혼합되는 경우 해당 비료의 추적조사,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가 어렵고, 위해성 있는 비료는 토양에 농축되어 계속해서 농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유사 입법례¹¹⁾와 같이 위해성이 인정되는 비료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하고 검사하려는 것으로,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5.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 신설(안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 신설)

개정안은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휴업 신고제도와 위반시 처벌 >

	현행	개정안		
		휴업기간	신고	위반시
비료생산업자	<신설>	6개월 이상	시장·군수·구청장	200만원 이하 과태료
비료수입업자	<신설>	6개월 이상	시장·군수·구청장	200만원 이하 과태료

현행은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공

11) 「대외무역법」 제5조, 「식물방역법」 제11조, 「사료관리법」 제4조, 「식품위생법」 제21조 등

장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임.

공장을 폐업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비료 및 원료(음식물폐기물, 분뇨 등)로 인한 악취,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비료 시설 방치에 따른 민원 사례 >



다수의 입법례¹²⁾에서도 폐업 뿐만 아니라 휴업의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폐기물관리법」 제3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등

개정안은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영업 현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장기간 방치될 수 있는 각종 비료·원료로 인한 악취, 수질 오염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됨.

6. 영업 승계의 신고(안 제13조제2항 신설)

개정안은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영업 승계의 신고 >

	현행	개정안		
		신고기간	신고	위반시
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	<신설>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	200만원 이하 과태료

현행은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의 사망, 합병 등으로 영업을 승계한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비료업체의 관리 및 비료품질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¹³⁾와 같이 비료생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안은 비료생산업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됨.

7. 영업정기 기간 확대(안 제20조제1항, 제2항)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현행**은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 관련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기간 >

	현 행	개 정 안
비료생산업자	등록취소 또는 3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비료수입업자	영업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연중 일정 기간만 영업을 하는 비료생산업자 등의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실효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며, 특히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등)는 대부분 상반기에 공급이 완료(약 75%수준 공급)되므로 영업정지 처분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처분기간(3개월)이 짧아 행정

13) 「농약관리법」 제5조, 「식품위생법」 제39조, 「동물보호법」 제35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등

처분의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임.

개정안은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료생산업자 등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농가의 피해예방과 비료 품질향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짐.¹⁴⁾

8. 비료에 대한 거짓·과대광고의 금지(안 제20조의2 및 제28조제3호 신설)

개정안은 비료의 성분·효과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거짓·과대광고 금지 및 처벌 >

	현 행	개 정 안
거짓광고 등의 금지	<신 설>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금지
벌 칙	<신 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

현행은 비료 용기나 포장재에 거짓 표시 등을 하는 경우는 처벌이 가능¹⁵⁾

1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의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등에서도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함.

15) 「비료관리법」 제14조(보증 표시 및 관리) ① 비료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나 전단지,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처벌근거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개정안은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농업인의 피해 및 부당이득을 방지하고, 비료 오·남용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실례로 「농약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서 허위광고, 거짓 표시 등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농약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안 제21조의2 신설)

개정안은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처분일부부터 1년간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것임.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비료생산업자등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간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에게 승계

현행은 행정제재처분 승계제도가 없어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따라 개정안은 종전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의 행정제재처분을 승계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정·불량비료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예방 및 환경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됨.

다만, 개정안에서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간 비료생산업 등을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으나, 유사 입법례와 같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하도록 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 신 설 >	비료생산업자등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간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에게 승계	비료생산업자등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에게 승계

< 유사 입법례 >

농약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행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10.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 일부 폐지(현행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삭제)

현행은 비료생산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에 맞지(법 제23항제1항제1호)않거나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료를 유통·공급한 자의 생산업 등록(법 제23항제1항제3호)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비료생산업등의 등록 또는 신고 제한>

법 제23조 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호	-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등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u><삭 제></u>

제2호	- 비료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취소된 비료생산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현행과 같음)
제3호	-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종류의 생산업 및 수입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삭 제>

① 개정안(안 제23조제1항제1호 삭제)은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등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의 비료생산업 등록에 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현재 ‘비료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6호)’ 비료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등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일반적인 입법례¹⁶⁾가 영업을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의 등록제한 보다는 비료생산업 등록 과정에서 기본요건을 갖추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이 비료산업을 위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② 개정안(안 제23조제1항제3호 삭제)은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종류의 생산업 및 수입업의 영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금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9조 등

업을 하려는 경우'의 비료생산업 등록에 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일정한 기간(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비료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범법자로 하여금 부정·불량비료의 유통·공급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다수의 입법례¹⁷⁾가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무등록 비료생산업 및 미신고 비료수입업을 한 자에 대해 상당기간(2년) 등록제한을 두는 것은 부정·불량비료의 생산·공급을 방지하고 농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법 제23조제1항제3호 삭제) 보다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법 제23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호	-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등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삭제>	<삭제>
제2호	- 비료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취소된 비료생산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3호	-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여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종류의 생산업 및 수입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삭제>	(현행과 같음)

17) 「동물보호법」 제33조,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9조의2, 「먹는물관리법」 제16조 등

11. 비료업자 등에 대한 명령 및 보고의무 폐지(안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3호 삭제)

현행은 농식품부장관 등은 비료업자·농업협동조합중앙회·비료의 운송업자·창고업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폐지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폐지하려는 것임.

< 비료업자 등의 의무 >

	현 행	개 정 안
비료업자 등의 의무	<u>명령의 수용 및 보고</u>	<u><삭 제></u>
의무 위반시	<u>500만원 이하의 과태료</u>	<u><삭 제></u>

현행은 비료업자 등에게 해당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비료업자 등의 업무부담을 경감해 주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명령 및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법률¹⁸⁾에서 사업자에 대해 명령 및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비료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자료조사 및 확보를 위해 보고가 필요할 것이며, 주무부처로서 비료업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또한 계속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8) 「경관법」 제18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및 제7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6조 및 제49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등

다만, 농식품부장관 등은 아직까지 비료업자 등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한 사례가 없고, 비료업자 등에 대한 명령은 기존의 보고, 자료제출 및 행정처분 등으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명령’은 개정안과 같이 삭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비료업자 등의 의무	명령 수용	<삭 제>	<삭 제>
	보 고	<삭 제>	(현행유지)
의무 위반시	명령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삭 제>	<삭 제>
	보고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삭 제>	(현행유지)

12. 권한의 위임(안 제26조)

현행은 농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소속기관의 장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권한의 위임 >

현 행	개 정 안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 가능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 가능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의 추진으로 부산물비료 시장이 연간 8천억 수준으로 성장한 반면, 부산물비료(퇴비 등)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일정 부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사 강화 및 품질개선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비료의 검사 및 품질관리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권한의 위임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에게 있으나 지자체는 인력 및 전문성이 미흡(평균 근무기간이 13개월 수준)하고, 농촌진흥청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3명¹⁹⁾에 불과하여 체계적인 검사를 통한 품질관리가 힘든 실정임.

따라서, 전국으로 분산 유통·판매되는 비료의 체계적인 검사 및 품질관리를 위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소속기관의 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²⁰⁾)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개정안은 적절한 입법조치라 보여짐.

담당 조사관	연 락 처
신 광 수	788-2190

19)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과장, 계장, 주무관

20) 전국 시군단위 109개 사무소 운영

